

군산시 과 등에 두는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훈령 제417호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에 따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군산시가 건립·운영하는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경암동 504-2, 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센터”는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3. 상품의 전시
4.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5.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제2장 센터의 운영

제4조(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단체
2.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운영관리 사무를 수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센터” 건립 목적에 부응하는 운영 의무
2. “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권한
3. 제4조의 운영자격 유지 조건
4. 부정행위 등 계약해지 사유
5. 민자부담금 등의 납부 방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은 수탁자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해야하며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을 위탁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관계 법령과 세부 규정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센터”의 증축 및 대수선, 주요 장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체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외의 공공요금, 각종 부담금 및 시설물·장비의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지역사회 기여) ①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우선적으로 군산시민을 채용하고 지역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②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수탁자와 시장은 지역 소비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역 물가안정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8조(민자부담금 등 납부) ① 수탁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및 협약에서 정한 민자부담금, 사용료 등을 시장에게 납부해야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민자부담금, 사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장 지도·감독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북도 사업담당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
2.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회계,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시장이 유통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비로 구축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이 미흡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운영단체 경고를 결의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매년 “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령” 제8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요령” 제20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제8조에 의한 민자부담금 등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제10조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연속하여 3회 운영단체 경고를 결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 운영관리 위탁을 종료 또는 해지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민자부담금 처리에 관해서는 협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다.

제13조(시설반환) 수탁자는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 해지로 “센터” 운영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실적

<단체명 : >

1. 개요

- 센터명 :
- 소재지 :
- 운영자 :
- 사업비 : 총 백만원(시·도비 , 시·군·구비 , 민자)
- 건립기간 : 착공일 200 . . . 준공일 200 . . .
- 규모 : 부지면적 m^2 , 건물연면적 m^2
- 주요시설 :
- 취급상품 :

2. 운영현황

☐ 월별 조합원 수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품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조합원 수													
매출액													
상품품목 수													
종업원 수													

☐ 재산변동현황

구 분	전년도	당해연도
시 설		
채 무		

☐ 내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 : 자체감사 및 감사원 등 외부 감사결과, 국회 및 시의회 등에서 지적한 사항

☐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붙임 2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단체
 2.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립·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가.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나.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다. 상품의 전시

라.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마.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2. “사업비”는 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보조금·민자부담금으로 구성한다.

3.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도비“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자금(이하 “시·군·구비“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4. “사업추진기간”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5. “센터의 재산”은 사업비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센터의 부지·건물 및 시설·장비 등과 사업비로 발생된 지식재산·유가증권·수익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의2(상품의 판매) 센터는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의 공동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통기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한 판매는 센터 매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제2장 운영체제

제4조(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며, 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립·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제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제5조(중소유통기업자단체)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센터의 건립 또는 운영 위탁시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센터를 건립 또는 운영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시·군·구의 사업담당과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별로 구성·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해당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광역지자체의 경우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의 사업담당자(해당 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일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통기업을 대표
2.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회계,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통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

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의 수립·변경 등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비로 구축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지원대상 및 기준

제8조(지원대상) 센터의 건립·운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최소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
2.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자

제9조(시·도비 지원기준) ① 시·도지사는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대 사업비의 60% 한도에서 시·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비의 지원은 시·군·구가 30%,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군·구비와 민자부담금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건립비 범위)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건립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집행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건립비 외 별도 재원으로 민간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물류시설·판매

시설 건립비, 부지매입비 및 장비 구입비

2. 운영에 필요한 표준화, 정보화 설비(주문·재고관리 시스템 등)의 구축비

3. 기타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구축비

②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은 중소기업자단체의 소유로 할 수 없다. 단, 시설이나 장비 등과 사업비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수익권 등의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예산편성 및 사업비 교부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중소기업자단체가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내 유통관련 물류센터 현황
2. 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사업 추진방향
3. 센터 건립 세부계획 및 소요재원
4. 센터 건립에 따른 민자부담금 및 건립 후 운영자금 확보계획
5. 센터 이용조건과 이용자 확대 계획
6. 취급가능 상품 및 상품의 구매 계획
7. 중소기업자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사본
8. 중소기업자단체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서류
9.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시·도비 예산의 편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비를 지원 받아 센터 건립 또는 건립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시·군·구명(중소기업자단체명 포함)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내용(센터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및 조건,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부지확보, 지방보조금 및 민간자부담 확보 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 증빙자료)
5.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전략(재산의 소유 및 관리방안 포함)
6. 사업비 내역 및 산출근거 등

② 시·도지사는 시·도비의 예산계상 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소기업투자단체가 이용 가능한 유통물류센터가 있어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중복투자의 우려가 큰 경우
2.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민자부담금, 운영자금 등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투자단체의 참여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를 없는 경우
4. 회원 및 이용자 확대 계획이 미흡하거나 중소 소매업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저해할 경우

④ 시·도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시·도비 교부계획 통보 및 교부신청) ① 시·도지사는 매년 센터 건립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비를 교부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도비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시·군·구 사업예산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명한 예산확보 협약서
3. 민자 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4. 부지 확보 증빙서류 또는 실현 가능한 확보계획
5.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제14조(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시·도비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급결정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교부가 결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 건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건립 목적에 부응하는 운영 의무
2. 센터 재산의 소유권 및 운영권
3. 센터 지도감독 권한
4. 제8조의 지원자격 유지조건
5. 부정행위 등 계약해지 사유
6. 제26조에 의한 위탁 주체 변경 시 민자부담금 처리 방안
7. 수익금에 대한 처리 방안
8.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사업집행 및 정산

제15조(지방보조금의 용도와 사용 금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규정, 시·도비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사업비 집행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받은 시·도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센터 건립에 보조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단체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시설공사계약 및 장비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 지급전이라도 시·군·구비 및 민자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 중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비 교부신청서(제13조제2항1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사항별 세부내용 및 변경사유
2. 당초와 변경 세부내역 대비표
3. 사업비 증감사유 발생 시 향후 처리방안

② 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시·군·구비, 민자부담금을 감액하여 시·도비 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제18조(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건립을 추진 중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집행 부진시 사유를 제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립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계산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비 정산 잔액(환급 부가세 포함)은 반환하여야 하며,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유사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④ 반환하는 시·도비는 집행잔액 외에 이자를 포함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서 정한 세부규정 내용에 따라 센터운업을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위탁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의 건립·운업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단체는 센터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시·군·구가 제정한 세부규정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자단체에게 운영 위탁 시 수·위탁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지도감독 권한 및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운영위탁계약상의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센터운업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단체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센터의 이용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센터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의무
2.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자에게 센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
3.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의무
4.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
5.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
6. 시·군·구의 실태조사와 서류의 열람이나 자료의 제출에 협력해야 할 의무
7. 중소기업자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제7조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의무
8. 그밖에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

제20조의3(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단체가 운영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센터의 적법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중소기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의 중요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센터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시의 승인 없이 센터의 중요재산을 수탁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중소기업자단체가 이 협약을 체결 또는 이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건립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여 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중소기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과 중소기업자단체가 합의한 경우

제6장 운영 및 사후관리

제21조(재산의 처분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 등 중요한 재산을 물류센터 개소 후 10년 동안(이하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의 건립목적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도 운영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설비 등의 의무목적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렉시설,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설비 : 5년.
 2. 소모성 설비 : 2년.
 3. 그 밖의 시설물은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정한다.
- ② 중소기업자단체는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업추진기간 동안은 센터 재산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 사업추진기간 동안의 센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21조의2(재산의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를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및 매각하거나, 중소기업자단체와의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 할 경우 중소기업자단체의 민자부담금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별로 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그 상당한 가액을 중소기업자단체에 반환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타 센터의 재산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 하여 처리한다.

제22조(재산처분의 승인 기준) ① 센터의 재산처분에 대한 승인은 보조 사업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② 운영자금 차입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 가능범위는 민자부담 범위 내의 금액(채권최고액)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근거당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시·군·구가 1순위 근거당 설정)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금 차입 목적 및 이유
2. 차입예정금액 및 담보제공 내역
3. 차입자금 상환계획

제23조(사후관리 및 운영방안 강구) 시장·군수·구청장 및 센터를 건립·운영하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센터의 건립·운영관리, 운영활성화 및 활용 증대 방안 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건립비의 납부) 건립비는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나,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의 경우,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이때 납부한 부지의 가액은 쌍방간 토지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지는 건립비에 포함된다.

제25조(점검·평가, 자료제출 및 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센터의 건립·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군·구 또는 중소기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도 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차년도 1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 운영중단, 불법운영 등 중요사항을 발견 즉시 시·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건립·운영주체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 결과 규정위반을 확인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게 시정명령 후 특별한 사유없이 지체되거나 그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위원회 의결 후 위탁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유통기업단체가 출자한 민자부담금의 처분은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27조(업무의 위임) 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제25조의 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위임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위임 업무에 대한 수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에서 직접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에서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 등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3-315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보증(안 제2조)

－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기존 근거 조례 항목 반영 및 맞춤법 표현 정비

나. 이차보전금 지급 절차(안 제3조)

－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기한 명시로 지급 절차 명확화

다. 협약체결(안 제4조)

－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기존 근거 조례 항목 반영 및 맞춤법 표현 정비

라.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5조)

－ 조례 개정사항 반영하여, 이차보전 지원 중지 요건을 사업장 관외 이전과 폐업의 경우로 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5. ~ 2023. 3. 7.(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지역경제활력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일반우편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7층 지역경제활력과
- 전자우편 : publictry@korea.kr
- 팩 스 : 063-454-6013
- ※ 팩스 제출 시 수신확인 필수
- 문의 연락처 : 063-454-2682

5. 제출서식 : 별첨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시행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를 “매 분기 말 이후 1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4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주소 또는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례보증)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대한 특례보증 조건 및 절차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그 <u>밖</u> 에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특례보증) ----- ----- <u>제7조제4항</u> ----- ----- ----- <u>밖</u> 의 ----- ----- -----.
제3조(이차보전금 지급 절차) ①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u>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1호서식</u> 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이차보전금 지급 절차) ① ----- ----- <u>매 분기 말 이후 1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u> 을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협약체결)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그 <u>밖</u> 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약체결) -- <u>제8조제4항</u>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밖</u> 의 -----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u>주소 또는 사업장</u> 을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거나 폐업 하였을 때 2. (생략)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 ----- ----- -----. 1. <u>사업장</u> ----- ----- ----- 2.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23-13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10.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7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3. 2.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풍마길 14 (장재동)		20230203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공장세탁소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 도1길 4		20230201	건물신축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 도리 34-1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 도1길 2	20230208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 곡리 28-1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망 해산로 175	20230206		20120808	망해로의 어감이 좋지 않고 망해산에서 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 포리 331-27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원 서포길 27-7	20230203		20100125	서포리 원서포 마을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학 당리 443-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학 당양지길 16-4	20230126		20070528	풍신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840-17, 840-2, 840-10, 840-11, 840-12, 840-22, 894, 894-10, 895-1, 895-2, 895-3, 896-54, 896-66, 938-5, 938-12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로 27 (오룡동)	20230125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131-24	전라북도 군산시 안정재길 7-1 (내흥동)	2023012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84-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1길 2 (수송동)	20230123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군산시 고시 제2023 - 1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60호(2018.5.11.)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산시 수송동 658-4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수송동 658-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사업
 - 나. 명 칭 : 남북로~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연장(m)	폭원(m)	면적(m ²)	
중로2-15	165m	15m	전북고136 (‘87.10.22.)	165m	15m	2,582m 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당초 2018. 5. 11. ~ 2022. 12. 31.

나. 변경 2018. 5. 11.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7.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군산	수송	658-48	답	760	760	-	군산시			
2	군산	수송	51-35	답	270	270	-	군산시			
3	군산	수송	51-33	답	415	415	-	군산시			
4	군산	수송	51-31	답	576	576	-	군산시			
5	군산	수송	51-28	답	176	176	-	군산시			
6	군산	수송	51-19	답	143	143	-	군산시			
7	군산	수송	761-3	구	12040	242	농수산부	국			
소계(7필지)						2,582					

군산시 고시 제2023 - 1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은성종합개발
 - 나. 대 표 자 : 유병성
 - 다. 주 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63길 4, 606호(어양동, 하모니시티)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10월 21일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3년 1월 30일
5. 사업내용(변경승인 내용 반영)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산137-1번지 외 108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36,128㎡
 - 라. 건축면적 : 11,067.5628㎡(건폐율 : 30.63%)

마. 연 면 적 : 140,080.9652m² (용적률 : 247.3%)

바.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9층 / 아파트 8개동 외, 722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민영주택	722				
84A	민영주택	160	84.6247	23.8942	108.5189	
84B	민영주택	106	84.6608	24.2527	108.9135	
84C	민영주택	106	84.3966	24.0041	108.4007	
84D	민영주택	85	84.8291	23.8940	108.7231	
114	민영주택	261	114.4542	30.6988	145.1530	
226	민영주택	4	226.8651	65.2775	292.1426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340,214,783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11월 30일

6.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9	지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36,441	증) 309	36,750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m ²)	결정사유
변경	69	군산시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 면적변경 - 36,441m ² → 36,750m ² (증 309m ²)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형화 및 지적분할에 따른 확정면적으로 정정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6	15~18	집산도로	948 (94)	지곡동 대로2-11	지곡동 대로2-9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중로	2	63	15~18	집산도로	303 (133)	소로 1-472	지곡동 중로2-16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 ()는 폭원변경부분 연장임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1BL	36,441	증)309	36,750	1-①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35,820	증) 308	36,128	공동주택용지
					1-②	지곡동 산140-13번지 일원	244	감) 5	239	도시계획시설 (도로)
					1-③	지곡동 414-1번지 일원	377	증) 6	383	도시계획시설 (도로)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1-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 60% 이하	조례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조례 25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4)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 불허
주변도로 폭원확장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확폭 - 중로2-16호선 일부구간 확폭개설 : B=증 3m, L=94m - 중로2-63호선 일부구간 확폭개설 : B=증 3m, L=133m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실음생략

8.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3 - 1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 3-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조촌동 79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799번지 외 8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나. 명 칭 : 조촌동일원(중로3-7호선)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중로 3-7 : B=12m, L=105m, A=1,553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799	도	4,298.3	1,370	군산시					
2		740-24	대	554.8	19	이*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3		740-21	대	178	53	김*화	전북 군산시 법원로				
4		740-18	대	84.1	15	송*자	군산시 경암동				
5		740-17	대	126.1	15	김*례	전북 군산시 서수동2길	군산시		지상권	
6		158	대	291	11	주*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분의1
						박*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분의1
7		397-9	대	14	14	박*자	군산시 조촌동				
8		397-6	대	169	48	박*자	군산시 조촌동				
9		414-7	대	148	8	오*근	군산시 조촌동				358분의 63
						이*문	군산시 조촌동				358분의 24.77
						박*연	군산시 조촌동				358분의 32
						육*수	군산시 구암동				358분의 145.73
						이*규	전북 군산시 법원로				358분의 92.5
계	9필지			5,863.3	1,553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실제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158	대	수 목	회양목	8주	주*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분의1				
							박*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분의1				
2		397-5	대	수 목	Φ60, H=10m	1그루	변*식	군산시 조촌동					
					Φ50, H=6m	1그루							
3		414-7	대	수 목	Φ15, H=2m	4그루	오*근	군산시 조촌동	358분의 63				
							이*문	군산시 조촌동	358분의 24.77				
					Φ50, H=4m	1그루	박*연	군산시 조촌동	358분의 32				
							육*수	군산시 구암동	358분의 145.73				
							이*규	전북 군산시 법원로	358분의 92.5				
4		122-12	대	수 목	Φ30, H=10m	1그루	주택도 시 보증공 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5		740-21	대	건 물	목재+판넬 (11,000x3,000x2,800)	1채	김*화	전북 군산시 법원로					
				건 물	콘크리트+스레트 (13,000x4,000x3,500)	1채							
6		414-1	대	건 물	콘크리트+판넬 (9,000x7,000x4,300)	1채	오*근	군산시 조촌동	358분의 63				
							이*문	군산시 조촌동	358분의 24.77				
							박*연	군산시 조촌동	358분의 32				
							육*수	군산시 구암동	358분의 145.73				
							이*규	전북 군산시 법원로	358분의 92.5				
7		123-7	대	건 물	콘크리트+스레트+판 넬 (4,000x3,000x3,000)	1채	장*자	전북 군산시 내사길					

군산시 고시 제2023 - 2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2-182호(2022.11.4.)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경암동 57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경암동 577-4번지 외 3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개설사업
 - 나. 명 칭 : 경암동 로컬푸드복합센터앞 가감속차로 설치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
 - 가. 당초 : L=135m, B=5m, A=838m²(가감속차로 설치)
 - 나. 변경 : L=135m, B=5m, A=833m²(가감속차로 설치)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먹거리정책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가. 당초 : 2022. 11. 4. ~ 2022. 12. 31.
 - 나. 변경 : 2022. 11. 4. ~ 2023. 5.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변경)

7.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변경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경암동	577-3	대	297	4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57	대	93	20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경암동	577-1	대	3,653	25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4	도	3,825	52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합 계	4필지		7,868	838						

(변경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경암동	577-3	대	297	4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57	대	93	15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경암동	577-1	대	3,653	25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4	도	3,825	52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합 계	4필지		7,868	833						

군산시 고시 제2023 - 2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은파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0-52호(2020.4.16.)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나운동 1233-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은파유원지)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23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은파유원지) 사업
 - 나. 명 칭 : 은파관광지(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없음)
 - 가. 도로확폭 및 정비
 - 은파유원지 조성계획도로 중로3-1호(내부순환도로)
6,643㎡(L=405m, B=12m)
 - 나. 야외공연장 정형화 해당구간 시행
 -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야외공연장(53) : A=585㎡
6,913㎡(585㎡ : 금회 정형화 해당구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관광진흥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가. 당초 : 2020. 4. 16. ~ 2022. 12. 31.

나. 변경 : 2020. 4. 16. ~ 2025.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변경없음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나운동	1222-17	전	116	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나운동	1222-31	전	116	1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나운동	1222-35	잡	212	20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나운동	1222-36	잡	1,626	35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합 계	4필지		2,070	585						

군산시 고시 제2023 - 2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2-165호(2022.10.21.)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3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부지면적(변경) : 9,879㎡ ※분할측량에 따른 지번별 면적 변경
 - 나. 건축규모(변경없음) : 건축면적 1,383.60㎡, 연면적 1,679.3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농촌지원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2022. 10. 21.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변경)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변경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산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개정면 운회리		634	33	답	3,779	3,422	군산시				
2			634	34	답	3,770	3,393	군산시				
3			634	35	답	1,820	1,820	군산시				
4			634	108	답	1,570	1,244	군산시				
소계						10,939	9,879					

(변경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산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개정면 운회리		634	33	답	3,779	3,414	군산시				
2			634	34	답	3,770	3,405	군산시				
3			634	35	답	1,820	1,820	군산시				
4			634	108	답	1,570	1,240	군산시				
소계						10,939	9,879					

군산시 공고 제2023-302호

공 고

우리시에서는 「경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2월 08일

군 산 시 장



1. 위원회 명칭 : 군산시 경관위원회
2. 위원회 임기 : 2023. 03. 20 ~ 2025. 03. 19(2년)
3. 모집인원 : 20명
4. 모집분야 : 경관·디자인·건축·도시·조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신청자격
 -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디자인(모집분야)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
 -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이상
 - 3) 기술사, 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이상
 - 4) 모집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5년이상
 -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등 모집분야의 연구 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6)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참고)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는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하여 위촉
- 위원회의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

6. 신청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23. 02. 17.(금) 18:00까지
- 2) 접수장소 : 군산시 건축경관과(본관 1층)
-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leonian035@korea.kr)
- 4) 제출서류
 - 경관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1부(붙임 참조)
 - 서약서 1부(붙임 참조)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자격요건 확인 필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한글파일(hwp파일)로 작성(재직증명서 등 이미지파일을 한글파일에 편집)하여 제출 바랍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1)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접수된 신청서는 군산시 경관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경관과(063-454-4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3-3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수취인 주소·거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14.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나. 위 치 : 군산시 송풍동 937-5번지 일원
- 다. 사업내용 : 이주대책 18가구 등
- 라. 시 행 자 : 군산시장
- 마.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2. 공고기간 : 2023. 2. 14. ~ 2. 28.(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시보, 홈페이지 게시

4. 보상계획

- 가. 장 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5층) 자연재난계(☎063-454-3863)
- 나. 시 기 : 2023. 2. 3.(금) ~ 2023. 2. 28.(화)
- 다. 방 법 : 보상협의(소유권 등기이전) 후 신청 은행계좌로 입금
- 라. 대 상 :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기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그 외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은 해지 후 협의

※ 상속대상자는 상속관련 절차 완료 후 협의

5. 공시송달 대상

1) 편입 토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송풍동	937-5	전	76㎡	76㎡	김*수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308, 803동 1204호(연산동, 연산골드클래스8차)	
2	송풍동	937-15	도로	53㎡	53㎡	김*수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308, 803동 1204호(연산동, 연산골드클래스8차)	
3	송풍동	978-2	전	2819㎡	171㎡	유*금	군산시 송풍동 977	지분 1/17

6. 기타사항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3 - 362호>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2월 14일

군 산 시 장

